

... 일반국민 편 ...

# 청탁금지법 금지사례 10가지



국민권익위원회

## Ⅰ 일반국민-금지편 Ⅰ

- 01 대학병원 직원을 알고 있어요. 진료일자 좀 앞당겨 달라고 해도 되나요?
- 02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어요. 눈 감아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?
- 03 고소·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. 담당 경찰관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쥐도 될까요?
- 04 공공기관 계약 입찰시기입니다.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?
- 05 아이 담임선생님께 면담하러 왔어요.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?
- 06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식사 3만원, 선물 5만원. 동시에 해도 되나요?
- 07 식사 후 2차로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. 1인당 총 5만원이 나왔는데 허용되나요?
- 08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직원들과 식사하리며 선물로 5만원을 쥐도 되나요?
- 09 직무 관련 공무원이 승진했습니다. 경조사비 10만원 상당의 난을 드려도 되나요?
- 10 친목회비로 직무관련 있는 비회원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되나요?



# 대학병원 직원을 알고 있어요. 진료일자 좀 앞당겨 달라고 해도 되나요?



응급환자가 아니라면,  
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보다  
진료일자를 앞당기도록 요구하는  
것은 부정청탁이므로 안됩니다.

응급환자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서 허용

**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어요.  
눈 감아달라고  
부탁해도 되나요?**



도로교통법령에 따른  
음주운전 단속 결과를  
묵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 
부정청탁이므로 안됩니다.

**고소·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.**  
담당 경찰관에게 5만원 이하의  
선물은 쥐도 될까요?



피고소인과 담당경찰관의 관계는  
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 
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 
선물을 주시면 안됩니다.



## ‘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’이란?

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 
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, 부조  
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 
 음식물(3만원), 선물(5만원), 경조사비(10만원) 가능

통상적인 업무회의  
 간담회, 자문회의 등 } 목적 인정 0

인·허가신청인, 지도·단속대상자  
 입찰 상대방, 고소·고발인 등이  
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 } 목적 인정 X



금지사례 04

**공공기관 계약 입찰시기입니다.**  
**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선물해도  
될까요?**



선물을 받는 시기, 입찰 예정자와  
계약담당 공무원과의 관계를 볼 때,  
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 
우려가 있어 선물해서는 안됩니다.



아이 담임선생님께 면담하러  
왔어요. 5만원 이하의 선물을  
해도 되나요?



학생의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 
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 
단순한 사교·의례의 목적으로 보기  
어려워 안됩니다.



#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식사 3만원, 선물 5만원. 동시에 해도 되나요?



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의  
식사는 3만원, 선물은 5만원까지이지만  
동시에 제공할 때는 식사는 3만원,  
총액 5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.

금지사례 07

식사 후 2차로 술자리가 이어  
졌습니다. 1인당 총 5만원이  
나왔는데 허용되나요?



연속해서 이루어지는  
식사 등은 합산되므로,  
3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.

#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직원들과 식사하라며 선물로 5만원을 줘도 되나요?



청탁금지법상 선물은 물품이나  
유가증권 등이며,  
현금은 선물로 볼 수 없어 안됩니다.

선물: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 
유가증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  
(법 제8조 제3항 제2호, 시행령 별표1)

**직무 관련 공무원이 승진했습니다.**  
경조사비 10만원 상당의 난을  
드려도 되나요?

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 
결혼과 장례에 한정됩니다.



따라서 승진시 10만원 상당의 난을  
보내서는 안됩니다.

# 친목회비로 직무관련 있는 비회원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되나요?



공직자가 친목모임  
회비를 낸 회원이 아니라면  
친목회비로  
선물을 해서는 안됩니다.

# 청탁금지법

시민과 함께,  
청렴사회를 만들어 갑니다.



국민권익위원회